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농업법인 소유 유희부지 임대 허용〉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29)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농업법인 소유 유희부지 임대 허용	3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농지의 본래 목적 보존과 공공적 활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제한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허 자원과 시설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Ⅲ. 검토의견

1.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농업법인 소유 유희부지 임대 허용

개정안은 농업법인 등이 전용 농지에 지은 건축물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

현행	문금주의원안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u>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을 영위할 수 없다. <u><신 설></u> <u><신 설></u>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u> ----- ----- ----- <u>-부동산업을-----.</u> <u>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u> <u>2. 해당 농지의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u> <u>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u> <u>부칙</u>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업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을 짓고 이를 활용하여 농지 임대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 훼손 및 비농업인의 수익 창구로 변질 등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21대 국회에서 농업법인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한 건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¹⁾된 후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되었음.

다른 한 건은 영농조합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위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되었음.

[농업법인 및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정안 현황]

대표발의	제안일	소위 심사	내용
이원택의원	'21.9.27	'21.12.2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의원	'23.3.27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사업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함.

1) 농식품부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여 계속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9조의5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현행법 제6조제2항제7호 등²⁾에 따르면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어업법인도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로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 후 소유가 가능함. 이하에서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음.

먼저, 농업법인과 그 사업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³⁾됨.

-
- 2)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 등이 설립한 법인임.

한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현행법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20조의 54)에 따라 농업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임.

[농업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등]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목적 등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각 목 생략>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등	

이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농업법인이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제20조의3⁵⁾에 따라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업 영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럼에도 현행 제19조의5에서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같은 해 8월 농업법인의 투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개정('22.8.18.시행)이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것임.

즉, 감사원이 2021년 7월 및 2022년 7월 각각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5)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따르면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매수·매도하는 등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다수 적발⁶⁾되면서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투기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를 명시하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반 시 벌칙도 강화⁷⁾하게 된 것임.

다만,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지 등의 임대를 수반하는 농촌관광 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은 제외)⁸⁾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농어촌

6)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21.7)'에서 경기도 소재 11개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매도하여 2017년 2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701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실과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2.7)'에서 부동산업만 영위한 전국 농업법인 272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37개 법인의 농지 투기로 인한 차익 1,391억원을 실현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농어촌정비법**」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업 영위 금지가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소유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법인 소유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⁹⁾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음.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 4.)」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중장기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특히 태양광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¹⁰⁾에서 2030년까지 46,500MW의 발전설비 용량 보급('25.2.기준 27,100MW)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정 일조량이 보장되는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도시 밀집도가 높아 많은 양의 태양광을 수집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부족한 실정임.

농지는 대부분 일조량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의 임대가 허용될 경우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가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둘째, 농업인이나 지역 주민이 농업법인의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업법인의 농지 등 유휴부지 임대를 허용하는 것은 농업법인

10)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2024.5.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 및 부동산업의 영위를 금지하는 동 조항을 신설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농업법인 제도는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되었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법인은 보조금 지원 등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50~100% 감면받음¹¹⁾.

또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 달성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¹²⁾.

그런데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건축물(농지 전용을 전제)을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업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농업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농업법인은 유휴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 전용하여 임대하려는 유인을 크게 가질 우려도 있음.

11)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참고자료 참조

12)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 조항은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마련된 조항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농업법인이 임대하는 유희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주체가 농업인 또는 주민이 아닐 경우 농촌지역 등에 귀속되는 수익 창출 효과는 미미한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그동안 농촌지역의 태양광은 외지인이나 사업자 주도로 보급되었고, 최근 태양광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 증가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생활권·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등) 발생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¹³⁾.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법인에 그 사업범위를 벗어난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유희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

13)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24.12.9.

참고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소영의원, '24.6.20)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농식품부 및 다수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 농식품부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과의 다툼 등 갈등 야기 우려, 농촌 경관 훼손, 농지잠식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6개 지자체도 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한 임대 허용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의 기여, 농업법인 제도 도입 및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 취지, 농가 또는 농촌의 수익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참고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지원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세	법인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 면제 - 영농조합법인 : 6억원(1인 한도)×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소득금액÷수입금액 이하의 금액 - 농업회사법인 : 50억원×(사업연도 월수÷12)×소득금액÷수입금액 이하의 금액 ③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면제 - 영농조합법인 : 1,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이하의 금액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 농업회사법인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가목~마목의 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 ※조특법 §105, §105의2, §106, §106의2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25.12.31.까지) ②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③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12.31.까지) ④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12.31.까지)
	양도소득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한도 : 연 1억원, 5개년 2억원) *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가 소재하는 (연접)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초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연접)시군구 또는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배당소득세 (2026.12.31.까지) ※조특법 §66, §68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배당소득 1,200만원까지 면제, 초과 배당소득은 5% 저율(기본 14%)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표준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지방세	취득세 (2026.12.31.까지) ※지특법 §11	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가축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②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026.12.31.까지) ※지특법 §11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